



고용노동부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# 고용노동부

수신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
(경유)

제목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개선 방안 시달

1.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마목의 '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'와 관련하여 점심시간 중 식사를 위한 장소로의 왕복 도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해석에 대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,
2. 불임과 같이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시달하오나 이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부에 보고(5월중)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개선방안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

행정주사

행정사무관

산재보상정책과  
과장

전결 05/21

협조자

시행 산재보상정책과-1932 (2018.05.21.) 접수 보상계획부-3036 (2018.05.21.)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7층 산재보상정책과 / www.moel.go.kr

전화 044-202-7717 전송 044-202-8091 /0605kbn@korea.kr / 비공개(5)

#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개선방안

- ❖ 점심식사가 노무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·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점심식사 중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  
⇒ 그간의 판례, 출퇴근재해 도입배경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

## 1 현황 및 문제점

- (규정) 휴게시간 중 ‘사업주 지배관리 하’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(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)
- (공단지침)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“사업주 지배관리하”로 해석
  - 구내식당이나 지정 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
  - 지정 식당이 없어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불인정(정기식당은 인정 가능)
    - \* 회의, 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인정
- (문제점) 사업장 상황(구내식당 유무 등)에 따라 인정여부가 상이해지고, 사업장 밖의 재해여도 산재로 인정되는 ‘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

## 2 개선방안

- (기본방향) 점심식사도 출퇴근과 같이 사회 통념상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
  - 다만, 점심시간(1시간)에 비취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로 해석 필요
- (개선방안) 구내식당 유무 등과 관계없이 통상 이동시간 편도 10분 이내(도보, 차량 무관)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왕복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(점심식사 목적이 아닌 사적행위의 경우는 불인정)
  - 업무와 관련된 식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

현재	개선 후
▪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: 인정 ▪ 그 외의 경우 : 불인정	▪ 이동거리 편도 10분 이내 인근 식당의 경우 사업주 지배 관리 인정
※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	

## 3 추진일정: 개선방안 시달(5월중) → 세부지침 마련 및 시행(6월~)